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 서신

한기총의 개신(改新)과 안정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분문드립니다. 5. 13. 교단장 단체장 회의록을 끝으로 40여 일간의 탐문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절차에 협조하고 격려해 주신 교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만 회원 66개 교단(신규가입 3개 제외), 17개 단체(신규가입 1개, 탈퇴 2개 제외) 중 아직까지 27개 교단, 4개 단체에서만 양식지(당일 현장 배부) 또는 이메일로 제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회의 당일에 참석한 교단은 43개, 단체는 67개였습니다.) 더 기다리기에 너무나 일정이 촉박하고 사태는 심각합니다.

지금까지 탐문 절차에서 나온 모든 의견과 진술 및 자료를, '법과 상식 그리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종합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한기총의 "개신(改新)과 안정"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제도가 문제라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동안 듣고 묻고 판단한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사관도 재판관도 아닙니다. 저도 인간이지라 나름대로의 판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를 밝히려는 것은, 저도 그리스도인인데 누워서 침 뱉어보라고 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제가 "서서 가리키 뽑기를 원하시나"까" 여쭙었으나, 주님께서는 "기만 두려워, 가리키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마태복음 13:29)"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저는 청문을 통한 '과거 문제의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를 지향하여 제도를 고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해법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직무대행의 임장과 한계를 이해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범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도리(로마서 13:1-5)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비록 분문 사건이 심리 중으로 아직 확정 판결이 없기는 하나, 일단 법원이 그 집행력을 부여한 가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제22회 총회 중 정회 선포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대표회장 인준 결의, 정회 임원인준, 정회개최, 신임교단 승인 등은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체 위에서만 직무대행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5. 31. 의결권 심사 절차가 마쳐질 때까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제로 비상사건으로서 법원에 총회 개최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6. 1부터 6. 9. 사이에 확정된 의결권수에 따른 대의원 파송을 요청하여야 20일간의 거치 요건을 충족시켜 6. 30.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됩니다. (대의원 명단은 15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는 10일 전까지로 규정)

- 안건 1. 정권,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 여부
- 안건 2. 대표회장 당선자에 대한 인준 여부
- 안건 3. 세상법정에서의 각종 소송 취하 권고 여부

우선 3의 안건은 결의되어도 해당 당사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없으나, 분쟁 제기의 목적이 금권권 거 등의 제발을 막고 한기총을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청문 과정과 공개 법정에서 명백히 밝힌 이상 1의 안건이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세상 법정에서의 분쟁은 종식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의 안건은, 분쟁 당사자들의 조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교계 여러 지도자들의 총언을 바탕으로 한기총의 설립취지와 단체법의 기본원리에 건전한 상식과 성경적 원리를 더하여 정리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연약한 형제 교단을 도와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섬기려는, 치리기관이 아닌 진정한 연합기관으로서의 본래적 모습에 맞는 제도로 되돌아가야 한다.
2. 연합기관인 만큼 현역 교단장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추어, 그 효율적,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대표회장의 권한이 설정되어야 하며, 각종 위원회와 상근조직 등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화되어서는 아니되고, 원로들은 순수한 원로로서의 후원 역할을 감당하는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3. 대표회장 경선 제도의 역기능은 막고 순기능은 취할 수 있도록 하되, 더불어 교회 및 교인 수(회비 분담금 규모)로 나타나는 실질적 비례적 평등의 원칙이 교단간 대표회장 배출 기회보장에 제도적으로 반영됨으로써 경선 과열이 없는 선거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4. 단체법의 보편적 원리에 따라,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의 의결권은 회원인 교단 단체가 파송한 대의원에게만 부여하고, 대표회장이 임명하는 집행부 임원들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총회의 의결권 상당부분을 장악하는 구조는 교정되어야 한다.
5.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려면 영성과 윤리성에서 최고의 모범을 보여야 하므로 금품 수수 행위 등 타락한 세상 풍조는 그 모양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발본색원하여 영원이 추방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실효적인 선거관리 제제 조항을 신설하고 각 교단의 선거, 추천 절차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평상시의 정권 개정은 총회, 임원회, 실행위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작년도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고 금년도 임원 인준은 모두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다가, 총회 소집을 앞둔 상태이므로 실행위원회 소집도 적절치 않아, 이제 법원의 승인을 받아 총회 자체에서 당일 발의, 개정하는 형태로 개정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실행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원칙에 따른 개정안(물론 비상상황이므로 필수불가결한 최소 조문만 수정할 것)이어서 실무적인 어려움은 없고, 다만 이는 결단의 문제일 뿐이라고 봅니다.)

작업은, 의결권 최다수를 확보하고 있는 양대 교단장 2인, 중소교단을 대표하는 교단장 2인 그리고 직무대행 모두 5인으로 특별소위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5. 31.(화)까지 성안토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개신과 안정"이라는 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위 안을 지지해 주셨지만, 아직 의견을 주지 않은 교단, 단체가 더 많습니다. 이제는 정식으로 제 진행 계획을 공지하오니 5. 23.(월)까지 위와 같은 절차 진행에 대해 교단 내 교인들의 총의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하신다면, 그 반대의 이유를 소상히 적어서 정식 공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견을 이메일 등으로 개진하신 교단과, 기본적으로 찬성하시는 교단이라면 굳이 공문을 발송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 안건은 모두 총회에서 다시 '찬성과 반대'의 민주적 토론절차(다만 평화적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찬반 발언자의

수와 발언 시간은 공평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를 거쳐 무기명 비밀투표로 총의를 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총회의 평화적 진행과 분쟁 종식에 관한 기본 합의가 담보되지 않는 한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5. 23.까지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그 즉시 직무대행직에서 사퇴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법관생활을 통해, 개인으로서의 양심과 직업으로서의 양심이 어긋날 때라면 자기 양심대로 판단하지 말고 법관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단체의 운명은 그 회원 다수의 총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다수의 의견대로 일을 진행시킬 직무대행자로 조속히 개임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십자가의 도(鎧)'가 그랬듯이 그 다수결이 무조건 진리를 만들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개별 교단이나 책임자 개인의 주관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부디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기준을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저 개인으로서의 줄곧 사퇴하고 싶은 마음뿐이오나, 위와 같은 절차 진행을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아가 이미 발송된 공문대로 의결권 확정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교단 임장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많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만, 그 한표 한표로 한기총의 운영이 달라질 수도 있는 심각성을 심분 감안하셔서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대부분 그 취지를 이해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로 하였으나, 극히 일부에서 절차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타교단과의 형평성, 의결권 배정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로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이 직무대행의 마지막 편지가 되길 희망합니다. 분문 재판부는 5. 18. 제1회 변론기일에 직무대행의 위 제한 보다 더 강력한 처분을 권고하였음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법률가라면, 더욱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단 제가 아니라도 이와 같은 권고를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총회 절차가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저 역시 임무를 마치고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이번 총회가 개신(改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안정 속에 추후 다시 모여 의논하고 공리하여 발전해 나가감으로써,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마태복음 5:9)"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응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계의 화해와 자정을, 말만 무성한 기도와 성령이 아닌, 오직 진실한 행함과 나눔으로 보여 주셔야 우리 사회로부터 실추된 명예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더불어 향후 교계의 분쟁은, 한기총이 세운 '한국기독교 회해중재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기관입니다)에서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교계 내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말씀(고린도전서 6:16)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주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올림.
2011. 5. 19.

인체와 술에 대한 이야기 ⑧

강봉규 목사 // 바른음주문화중앙협의회 · 세계기독교금주운동부흥사회 대표 회장



10강 **대뇌(大腦)를 말리는 알코올**

'보행, 청각 장애 유발'

살아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필요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살아 있을 때에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한다. 그러나 세포가 죽으면 말라 쪼그라들며 제 모습을 잃어가게 된다.

며칠 전에는 탭스리온 큰 오렌지를 냉장고 안에 넣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해 두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꺼내 먹으려 했더니 수분이 모두 빠져서 그 부피도 반으로 줄고 찌들어서 먹기는 고사하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였다.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다. 술꾼의 뇌(腦)가 말라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고 있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맹한 술꾼의 뇌를 해부해 보면 그런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뇌 전체가 말라 위축되어 있고, 표면에 있는 홈이 넓고 깊게 패어 있다.

또 수액이 채워진 뇌의 공간인 뇌실(腦室)이 넓게 커져서 젊은 사람의 뇌라는 사실을 의심케할 정도로 무게도 가벼워진 것이 발견된다. 오늘날 널리 보급된 X선 컴퓨터 단층촬영이 등장한 것은 1970대 후반이다. 이 컴퓨터 단층촬영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살아 있는 사람의 뇌를 병리 해부할 수 없으므로 술꾼의 뇌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뇌 속을 열어보지 않고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즉, 술꾼의 뇌의 위축된 모습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컴퓨터 단층촬영에 의하면 뇌 속에서도 전두엽이 마르는 것이 특히 두드러져 보인다. 소년의 앞부분도 가끔 마른다. 소년이 마르면 보행 장애를 수반한다. 전두엽이 마르면 자제심의 결여, 화내기, 충동적 행동 등이 나타난다. 알코올 전문가들의 조사로는 매일 청주 3홉 정도를 마시는 음주자의 절반 정도 가치는 있으나 뇌가 마르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 가장 큰 문제는 보행 장애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광기성(曠氣性) 보행이다. 광기성 보행이란 뇌가 손상되어 몸의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므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리 사이를 넓게 벌리고 걷는 것을 말한다. 걸음이 광기성이 되면 걸음 폭이 자연스레 좁아져 종종 걸음이다.

또 급히 방향을 바꿀 때 한 번에 휘 바 꾸지 못하고 종종걸음으로 조금씩 바꾼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발이 무거워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다. 나중에는 지팡이를 사용하게 된다. 대뇌가 마르면 청각 반응 장애도 발생한다. 사람의 귀에 들어온 소리는 외이도(外耳道)의 안쪽을 막고 있는 고막을 진동시킨다. 그 진동은 중이(中耳)에 있는 작은 3개의 뼈를 거쳐 안쪽으로 진행하여 중이의 안쪽에 있는 달팽이 모양의 소용돌이 바깥쪽 끝에 도달하여 그 속에 들어 있는 액체를 파도치게 한다. 이 파도는 소용돌이를 따라 점점 안쪽 끝이 깊어진다.

이 과정에서 액체에서 튀어나온 파동을 감지하는 정체를 진동시킨다. 이 자극은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청각신경에 의해 뇌로 옮겨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소리를 감지한다. 이 진동은 뇌에 들어간 다음 일정한 경로로 대뇌의 측두엽(側頭葉)으로 보내져 비로소 소리로 인식된다.

그에 따라 그 인근 영역에 도달하여 무슨 소리인지 인식된다. 뇌는 그때 인식했다는 신호를 보낸다. 소리를 듣게 하고 약 0.3초(300밀리초) 후에 나타나는 플러스 전위라는 의미로 이를 'P300'이라 한다. 청각성 유발 전위의 한 성분이다. 음주자에게는 이 신호의 발생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또한 미세한 수준에서 보면 대뇌가 말라 위축되는 것이 소뇌의 경우와 비슷하여 신경 세포의 수가 줄고 살아남는 것도 오히려 그럴 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높은 열효율로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온돌알미늄판패널

50% ~ 70% 절약 효과



장판, 마그네슘판, 알미늄, 단열재, 콘크리트바닥

전통 구들의 장점을 계승 발전한 온돌알미늄판패널은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저렴한 유지비와 친환경소재를 사용, 인체건강에 유익하며 특히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시 기존 바닥의 철거 없이 시공할 수 있어 시공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드립니다.

〈LH주택공사 연구원 발표〉

1. 습식온돌대비 최대 5배 이상 에열시간 단축
2. 바닥 평균 온도는 1.4°C~1.9°C 높으며
3. 온수 공급 온도별 발열효율은 11.9%~23.6% 높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알미늄으로 마감하느냐 시멘트로 마감하느냐... 알미늄 온돌알미늄판패널로 시공할 경우 종전의 시멘트 바닥보다 난방비를 50%~70%까지 절약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전기온풍기, 시스템난방, 필름 난방, 전기 패널 - 2배 이상의 절감효과

온돌알미늄판패널은 고효율 에너지 제품으로 저렴한 유지비, 친환경소재, 탁월한 안정성, 우수한 경제성과 시공으로 획기적인 절감효과와 난방 방법입니다. 교회, 어린이집, 펜션, 주택, 아파트, 식당, 사무실, 공공청사건물, 체육관 등 재건축시 기존 바닥의 철거없이 시공할 수 있어 시공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난방 시공이 가능한 곳 어느 곳든 설치 해 보십시오. 발명 특허번호 50%이상의 절감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주)코리아온돌판시스템 www.aluminumpan.com 설계, 건축, 시공 전에 이사 전 중규 H.P 010-3067-7224 꼭 상담바랍니다.

